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92
----------	------

제출연월일 : 2009. 11. 26.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관련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 및 용어 정비,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 단순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① 목적에 대한 근거 및 조문내용 명확화 (안제1조, 안제2조)
- ② “주택” 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의 범위 명확화 (안제4조, 제10조제1항, 제2항, 안제17조)
-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안제34조로 신설(안제5조의2,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 ④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범위 명확화(안제6조)
- 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폐지 (안제7조)
- ⑥ 지방세법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초과경감을 배제로 과세형평성 유지 (안제9조의2 제2항)
- ⑦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감면과 중복으로 삭제(안제11조)
- ⑧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안제12조)
- ⑨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음으로 폐지(안제13조)
- ⑩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법령 명확화(안제14조)
- ⑪ 전방조종자동차 정의 직접 규정함,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 현행 본문과 1호를 통합하여 본문으로 구성하고 2호를 삭제함(안제15조의2)
- ⑫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 명시(안제19조)
- 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음으로 폐지 (안제28조)
- ⑭ 군세감면신청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명시(안제3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고성군세 감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
- 200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세정과-11963(2009. 10. 01.), 세정과-12500(2009.10.14.) 세정과-12860-(2009.10.20.) 감면조례 표준안

○ 예산조치 : 불필요

4. 본 문 : 불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를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중 “운영”을 “설치 · 운영”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각각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

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6조 제2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주택을 제외한다)”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 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 및 제9조의 ----- 불균일과 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설치·운영 ----- -----.</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p>5 ~ 7 (생략)</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1.(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삭제> 3. <삭제> 4. <삭제> <p>5 ~7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p> <p>-----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 3(생략)	2~3 (현행과 같음)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 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② -----</p> <p>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p> <p>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p> <p>2 ~ 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p>
<p>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13조 (삭제)</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제1호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8조 (삭제)</p>
<p>제30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성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감면신청 등) ①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 ----- ----- -----. ② -----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p>
<p>(신설)</p>	<p>제34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